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030호 2016년 11월 17일(목)

공 고

-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7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16 - 783호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2. 제안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운영지침(2016.8.3.)」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 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지역 지정(안 제44조)
- 마.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48조)
- 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화장실, 경비실은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정함(별표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속초시장(참조: 건축디자인과)에게[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건축팀

- 연락처 : 033-639-2768 (FAX 033-639-2314)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담당(033-639-27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을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인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 중 “확인한다”를 “확인하고,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라고 한다.

제9장의 제목 “보칙”을 “건축협정”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로, 제46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장에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⑤ 법 제77조의 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6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 구조 건축물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미관지구내 건축물 (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3미터 이상

비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비고3)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화장실, 경비실로 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외벽 각부분(처마, 계단, 발코니포함) 으로 부터의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그 밖에 모든 건축물(단,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 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법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 -----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 ----- . <단서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 다.	② 위원장과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 ② (생 략)	제9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신설>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제33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인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실내건축) -----

----- 확인하고, 검사주기는 5년
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신 설>

제9장 건축협정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 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44조 (생 략)

제45조 (생 략)

제46조 (생 략)

<신 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10장 보칙

제46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7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제49조 (현행 제46조와 같음)

제48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

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어진 무벽 구조 건축물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2. 제정이유

-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수정

- ⇒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수정

나.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 조항 삭제 (안 제5조제2항)

- ⇒ 시장에게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사항에 대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수질환경사업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31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u> 제5조(조직) ① (생 략) <u>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u> <u>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u> <u>한다.</u>	<u>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u> 제5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2.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 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함(안 제4조)
-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조항 삭제(안 제5조)
-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회계과(경리팀)
- － 연락처 : 033-639-2171 (FAX 033-639-2396)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033-639-2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대리자”를 “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계기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보험금액”을 “해당보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 ----- 부채관리관 -----대리인 -----
2. 제1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 해당하는 사람 ----- ----- 사람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 -----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 ·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	<삭 제>

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시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
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
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생 략)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
----- 「지방회계법」 제49
조에 따른 -----
----- 그 밖에 -----

----- 해당보험금액-----

-----.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
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 -----

-----.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의 수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3인이상 5인이내인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인으로 정수화(안 제2조)
- 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3항)
- 다.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및 신분상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들의 검사 수당조정(안 제5조, 별표 1호)
- 라. 주민의 권리제한 침해 소지 가능성 있는 조문 삭제(안 제5조)

- 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내용 수정(안 제7조 제 1항)
- 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강화(안 제7조 제2항 삭제)
- 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회계과(경리팀)
- － 연락처 : 033-639-2171 (FAX 033-639-2396)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033-639-2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로, “3인이상 5인이 내로”를 “4명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의회”를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를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제3조제5항 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 및 신분상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중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를 “대표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의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검사 의견서를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별표 1 중 일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비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심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 ----- -----.
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u>	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 -- 4명으로 -----.</u>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u>지방의회가</u>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u> 자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지방의회에서</u>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u>위원은 지방议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u>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u>지방议회의 의장은</u> 선임된 위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u>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u> . -- <u>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u>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u>위원은 시의회에서</u>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⑤ <u>시의회 -----</u> 위원에게 별

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
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신 설>

지 제1호서식의 -----.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의회-----

-----.

제5조(겸임금지 및 신분상실)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
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기
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

4.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표위원) ①-----
----- 대표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

시의회-----
-----.

③-----
---- 시의회-----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삭 제>

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
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
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
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
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

제8조(검사협조) 시장 -----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

- 검사 의견서를 시장-----

-----,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 시
의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지
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
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생 략)

----. ----- 시의
회 -----

-----.

② (현행과 같음)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하수 조례

2. 제정이유

-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용도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 범위 수정
(안 제13조, 제16조)
-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적용법률 수정(안 제17조제4항, 제20조제3항)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
- 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문 삭제
(안 제23조 내지 제2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수질환경사업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세입)”을 “(세입·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회계”를 “세입 특별회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계량”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에 따라 지 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 ----- 제17조제2항 ----- ----- ----- ---.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 ----- ----- ----- ② -----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③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 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 성한다.	제13조(세입·세출) ① 세입 특별회 계----- ---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이
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에서 정하는 사업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
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
담금"이라한다)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②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삭 제>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
법 등) ① -----

-----.

1. ----- 제5
호--
- <삭 제>

제4호까지

② ~ ⑤ (생 략)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생 략)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가산금 등) ① (생 략)

②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채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까지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반행위 조사서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삭 제>

<삭 제>

<삭 제>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 조

<삭 제>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제정이유

-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수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 연체금 일할요율 적용과 장애인 요금 감면 규정 명시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 (안 제2조, 제4조, 제18조)

⇒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

나.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삭제

(안 제5조제1항, 제10조)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추가

(안 제15조)

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 명시 (안 제21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상·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고지하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와 통일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연체금의 일할요율 적용을 위한 관계 조항 개정 (안 제24조)

⇒ 현행 연체금의 고정비율(3%)을 1개월 이내 체납의 경우 일할요율을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관련 조항 개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수질환경사업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수관거상태”를 “하수관로의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용허가”를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7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각각 “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를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으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 제3호중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각각 “수급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m³/월)

구 분	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 축 물 의 증 축 및 용 도 변 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은 공공하수도(<u>하수관거</u> 를 말한다)로 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u>하수관로</u> ----- -----.
제4조(<u>하수관거</u> 준설 등) ① 시장 은 <u>하수관거</u> 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u>하수관거상태</u> 를 점검하여야 한 다.	제4조(<u>하수관로</u> 준설 등) ① ---- -- <u>하수관로</u> ----- ----- <u>하수</u> <u>관로의 상태</u> -----.
② <u>하수관거</u> 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 설을 하여야 한다.	② <u>하수관로</u> ----- ----- ----- ----- -----.
제5조(<u>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u> <u>준공검사</u>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u>점용허가</u> 를 받은 자는 허 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 치 등을 완료하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 <u>공검사</u> 를 받아야 한다.	제5조(<u>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u> <u>원상복구</u>) <삭 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
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
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
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
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
라졌을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

-----.

-----.

<삭 제>

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1.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여 정한다.

가.·나. (생 략)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8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
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타행위로 발생하는 하수량
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
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

-----.

1. (현행과 같음)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별표 7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 ① -----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하수관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면 등) ① -----

-----.

1.-----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활수급권자

2. ~ 4.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3. (생략)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

1. ----- 수급자

2.·3. (현행과 같음)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

----- 연체금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② (현행과 같음)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상위법을 그대로 재기재한 내용을 정비하고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2016. 1. 27.자로 상위법령 조문에서 삭제되어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안 제3조)
- 나.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명시(안 제4조)
- 다.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적용 법규 명시(안 6조제3항)

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위원회 관련사항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수질환경사업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

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